

평창군 문화복지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343
----------	-----

제출년월일 : 2017. 7.

제 출 자 : 평 창 군 수

1. 제안이유

민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평창군 문화복지센터 시설운영관리 자격
결격사유의 법적 공백을 방지하기 위해 용어정비가 필요한 평창군 문화
복지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위탁금지 (안 제15조)

- 수탁관리자가 될 수 없는 금치산자와 한정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과
피한정후견인으로 용어정비

나. 금치산자 등에 관한 경과조치(부칙 안 제2조)

- 피성년후견인과 및 피한정후견인에 대하여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사람이 포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민법 「별첨」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1) 입법예고(2017. 5. 10.~2017. 5. 30.) 결과, 제출 의견 없음

2) 규제심사 :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

3) 성별영향평가 : 개선사항 없음

4) 부패영향평가 : 원안동의

5) 법제심사 : 원안동의

6) 조례규칙심의회 : 원안의결

평창군 문화복지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평창군 문화복지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피성년후견인과 피한정후견인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금치산자 등에 관한 경과조치) 제15조제1호의 피성년후견인 및 피한정후견인에는 법률 제10429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사람이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5조(위탁금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수탁관리자가 될 수 없다.</p> <p>1. <u>금치산자와 한정치산자</u></p> <p>2. ~ 4. (생략)</p>	<p>제15조(위탁금지) ----- ----- -----.</p> <p>1. <u>피성년후견인과 피한정후견인</u></p> <p>2. ~ 4. (현행과 같음)</p>

관계법령 발취

【민법】

제9조(성년후견개시의 심판) ① 가정법원은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사람에 대하여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미성년후견인, 미성년후견감독인, 한정후견인, 한정후견감독인, 특정후견인, 특정후견감독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한다.

② 가정법원은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할 때 본인의 의사를 고려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3.7.]

제14조의2(특정후견의 심판) ① 가정법원은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일시적 후원 또는 특정한 사무에 관한 후원이 필요한 사람에 대하여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미성년후견인, 미성년후견감독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특정후견의 심판을 한다.

② 특정후견은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할 수 없다.

③ 특정후견의 심판을 하는 경우에는 특정후견의 기간 또는 사무의 범위를 정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1.3.7.]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제12조(위탁관리) ③ 군수는 위탁사무 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2. 미첨부 근거 규정

「평창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5항 중 제2호

3. 미첨부 사유

-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움

4. 작성자

작성자	평창군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명기
연락처	(033) 330 - 2150